

## 미등록이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재생산:

경기도 A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미\*\* · 류유선\*\*\*

### 1. 문제제기

약 36명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 주민이라는 2012년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이주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보여준다.1) 결혼, 노동, 유학 등 이주의 증가가 만들어내는 경제,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질적 변화는 수치화되기 어렵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전이를 선언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 범죄 증가’나 ‘외국인의 한국인 일자리 침

\* 본 논문은 2010년 선정된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FR-2010-328-B00050)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행정안전부의 2012년 외국인주민현황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의 수는 140만 9577명으로 총 주민 등록 인구 5천94만 8272명의 2.8%, 약 36명 가운데 한명이 외국인 주민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수는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이 2012년 8월에 발표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고, 총 주민등록인구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 12월 통계를 따른 것이다.

식'과 같은 부정적인 담론과 함께 단일 문화나 민족을 강조하는 국민국가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2006년 이후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국가 정책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통합의 대상인 합법적 이주민과 추방의 대상인 '불법' 이주민 간의 위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등록이주민, 즉 초과 체류 이주민의 일상적 삶과 노동 조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부재하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기대와는 달리 미등록이주민의 수는 20만 이상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기존 논의는 '불법'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차별에 대한 분석 및 인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성희 1992; 김희경 1995; 고준기 2006; 신지원 2007; 노재철 2010; 김병록 2010),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 사이에 놓인 불법의 경계에 대한 논의(조우석 2004; 설동훈 2005)와 미등록이주민의 관리 정책(설동훈 2006; 김윤식 2007; 최영신 2007; 최홍엽 2007; 박미경 2010; 이경희 2010)등이다. 기존 연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법적 체류 자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에 집중함으로써 '불법'으로 분류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존재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생활세계의 구체적 모습이나 지역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나 협상의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최근 미등록이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이주민과 선주민의 접촉과 이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거나(이선화 2008), 일상적 불안 속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갖는 역설적 이동의 자유를 강조한 논문(김민정 2011) 등이 그것이다.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이주민이 '불법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특수한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강원희 2012)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A가구공단이라는 특정한 지역 공간 안에서 미등록이주민이 선주민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거주 및 노동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들의 일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

적 지위, 즉, ‘불법성’이 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주민들은 어떠한 생존 전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등록이주민들이 A공단의 사회적 생산/재생산의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며, 어떠한 물리적, 정서적 안전망을 동원하여 A공단의 생산/재생산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확장시켜나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등록이주민을 제한된 조건 안에서 협상력을 갖는 행위자로 구성해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드 제노바(De Genova 2002)는 특정 국민국가의 이주 제도는 법과 국경 통제, 문화적 전략을 통해 ‘불법성’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주민을 관리하면서 주권 국가의 지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즉 ‘불법성’이 이주방식에 내재되어 있거나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이주제도에 의해 생산된다는 설명이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이주민의 ‘불법성’은 이주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셈이다. ‘불법성’의 합법적 생산을 위해, 국민국가는 이주민을 가상의 적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묘사하고(LeVoy & Geddie 2010; Oelgemöller 2010; Paspalanova 2008),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해 타자로 인종화한다(Askola 2010). 국민국가는 문화적 재현을 통해 이주민의 이질성을 부각시키고, ‘문제화’하고 인종화함으로써 이주와 이주민의 ‘불법성’을 완성한다(Hier & Greenberg 2002).

답론이나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구성성이 일상생활로 확장되면서 미등록이주민들은 외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감시를 내재화하게 된다. 즉 경찰과 행정 관료들이 단속과 감시를 통해 지역 거주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인

종과 문화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일상생활에서 구별하는 새로운 통치 전략의 도구가 되고 이주민 스스로도 이런 통치 전략을 내재화한다. 불예측적인 단속과 추방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 외에 상호 감시는 지역 사회의 고용주나 지원 단체 및 학교 등으로 이체되면서 주민들은 시민/비시민, 불법이주민/합법이주민 등으로 분류된다(Kretsedemas 2008). 따라서 ‘불법’이주민의 일상은 국가와 지역이 재현하는 ‘불법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주민들은 국가의 사법적 지위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분위기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구성하는 의식 속에서 특정한 생존방식을 만들어가면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구성한다(Willen 2007).

이주는 인간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주민은 이주와 동시에 새로운 삶의 공간에 진입한다. 이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제도와 규칙을 이해하고 적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이주민에게 요구되는 적응은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 제도와 규칙의 준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고 없는 단속과 추방의 위협 때문에 ‘불법’이주민들은 더욱 빠르게 주변 환경과 제도에 적응하면서, 이주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들에게 항상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이신(Isin 2002, McNevin 2007: 655-674에서 재인용)은 미등록이주민들이 거주하고 노동하며 소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면서 ‘불법’이주민이라는 주어진 정체성을 뛰어넘어 타자에서 주체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정 공간의 거주민들 또한 국민/비국민 혹은 시민/비시민의 추상적 분류보다는 일상적 거주자, 노동자, 세입자나 소비자, 공장주나 임대주라는 구체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표현한다. 즉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왔는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가? 인간적 평판은 어떠한가? 본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종교생활은 충실히 하는가? 국가공동체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지원기관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이주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불법적 지위’는 삶의 불예측성과 이에 따른 비용을 개인 이주민이 수용하는 구조를 강제한다. 런던으로 불법 이주한 파키스탄이주민들의 이주과정과 경험을 분석한 아마드(Ahmad 2008)의 연구는 유연한 글로벌 경제 체제 안에서 불법 이주민들은 삶의 경험 축적과 장기계획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불법’이주민들은 스스로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과하지만, 취약한 노동환경과 물질적·정신적 소외를 경험하면서, 애착과 믿음이 부족하고, 무관심이 일상화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된다. 특히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사회 서비스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당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통은 곧 인성의 파괴로 이어진다. 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송금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곧 가족의 재생산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본국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불법 지위 때문에 유입국과 본국 가족의 빈곤 모두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Walter, Bourgois & Loinaz 2004).

미등록이주민들은 불예측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체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추방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일상의 피폐함에 대응하는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이주 연구는 이주민들이 주로 종족 공동체를 통해 정보 교환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Massey, Arango, Hugo, Kouaouci, Pellegrino & Taylor 1993; 설동훈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이주민들이 A공단에서 맺고 있는 선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 이들 간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완벽하게 착취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 또한 아니다. A공단의 선주민과 미등

록이주민들의 상호의존성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회로망에서 주변성, 불법성, 영세성이란 개념에 대항하면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 3.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현장은 경기도 A지역에 위치한 가구 공단(이후 A공단)이다. A공단에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이주민들이 모여 산다. 가구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A공단 이주민역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sup>2)</sup> IMF 이전 2,000여 명에 달했던 이주민수는 2000년 중반까지 1,500여 명으로(전혁진 2002; 김희숙 2006), 현재는 약 700여명으로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이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이 미등록이주민으로 추정된다.<sup>3)</sup> 한국 내 외국인 노동이주자가 줄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A공단 이주민수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2008년의 대대적인 단속이후, 많은 이주노동자가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이 있는 부산이나 안산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한다. A공단 지역을 관리하는 공단 사업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이주민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본다.

A공단이 위치한 지역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은 한센인들이다. 1960년대 초 가족에게 쫓겨나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한센인들이 종교

---

2)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 1991년 A공단에서 6개월가량 머무른 낸시 씨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거리가 시끄러울 정도 많은 외국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이 이곳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3) A공단 이주민 수와 미등록체류자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2006년 김희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설문참여자의 99.9%가 미등록체류자로 나타날 정도로 ‘불법’체류자의 수가 많다. 현재 이주민 수와 80%라는 불법체류자 비율은 이주민들과 가장 교류가 많은 지원 단체의 추정에 따른 것이다.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정착했다. 한센인들은 양돈과 양계를 중심으로 자립 공동체인 A농장을 건설했다(김희숙 2006). 전국을 떠돌던 이들이 A농장으로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당시 ‘나병’에 대한 편견이 컸고, 점유지의 소유권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병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가족과 고향을 떠난 이들은 A농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면서 생존했고, 가족을 꾸렸다. 양계와 양돈을 주업으로 삼던 한센인 선주민들은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 되자, 축사를 공장시설로 변경했다. 축사를 공장과 전시장으로 개조한 선주민들은 자영농업인에서 임대주로 전환되었다(고광우 1998). 원래 무허가 건물이었던 축사를 공장 건물로 개조하고 변경하는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A공단 건물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다.

때맞춰 높은 땅값을 감당할 수 없던 서울의 가구공장과 전시장들이 1990년대 초부터 이곳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1989년 최초로 3개의 가구공장이 창업한 이후, 1990년대부터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곳으로 입주하기 시작해 IMF 이전인 1996년에는 400여 개의 공장과 70여 개의 가구판매전시장이 들어섰다(매일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 현재 약 80여 개의 가구전시장과 가구공장을 포함해 29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다.<sup>4)</sup> 싼 임금을 제공해 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A공단은 미등록이주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된다. 가구공장과 외국인 유입은 한센인 선주민들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해주었다. 임대수입으로 자본을 갖게 된 선주민은 자녀들과 함께 새로 건설된 주변의 아파트로 이사해 나갔고, 이들이 살던 집은 이주민들에게, 개조된 공장 건물은 공장주에게 임대된다. 사회적 낙인 때문에 고립된 지역에 함께 모여 살던 한센인 선주민들은 현재 A공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산권

4) A공단의 건물 및 건물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전시장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공단 사업관리부는 사업체 및 고용인원에 대한 통계는 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

행사자지만 A공단에 거주하는 선주민은 많지 않다.<sup>5)</sup>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9개월간 매 주말마다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A공단 이주민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층 인터뷰에는 물질적이고 심적인 제약이 뒤따랐다. 이주민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이고 이들 삶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지역 이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 해왔던 A공단 내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들이 일하는 공장을 방문했고, 이들의 결혼식, 생일파티, 아이 돌잔치나 공동체 축제 및 스포츠 행사에도 참여했다. A공단 이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저녁 모임과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은 계속되고 있다. 한센인 선주민 4명, 지원 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11명의 이주민을 면접했고, 보조 자료로 2013년 4월, 2명의 공장주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했다. 11명의 이주민 가운데 1명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로 인터뷰 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 이주민 11명 가운데 총 9명이 미등록이주민이다. 합법적 체류지위를 갖고 있는 두 명 가운데 한명은 미등록이주노동자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었고, 다른 한명은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으로 곧 합법적 체류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구체적 노동과 노동 공간, 생활공간 등을 보기위해 A공단 내 인터뷰 참여자의 일터나 집에서 이뤄졌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A공단 내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보통 한 회당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짧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이주민과의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

5) 2006년에만 해도 선주민들이 50여 가구 이상 A공단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희숙 2006). 그러나 연구자들은 현지조사 당시 적어도 8가구 이상의 한센인 선주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다. 인터뷰참여자의 이름은 이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가명	성별 (나이)	입국년도	체류지위	혼인여부	국적	일터	
이주민	남성	라이	남(47)	1991	불법	결혼	네팔	가구공장
		제리	남(48)	1991	불법	이혼	필리핀	가구공장
		차크마	남(30)	2000	불법	미혼	방글라데시	가구공장
	여성	넨시	여(40대)	1991	불법	미혼	필리핀	가구공장
		에라인	여(48)	1996	불법→합법	재혼	필리핀	가구공장
		프리사마	여(36)	2002	불법	결혼	네팔	가구공장
		루나	여(27)	2002	불법	결혼	방글라데시	가구공장
		파티마	여(30)	2003	불법	결혼	방글라데시	가구공장
		응옥타잉	여(28)	2006	합법	이혼	베트남	가구공장
		자넷	여(20)	1998/ 2002	불법	미혼	방글라데시	학생
	아동	몬주	남(14)	2002	불법	미혼	방글라데시	학생
지원 활동가	김태정	남(55)	<b>A공단 진입연도 1990</b>		결혼	한국	지원기관	
	박수호	남(45)	2003		결혼	한국	지원기관	
선주민	이규형	남(74)	1960년대 초		사별	한국	공장임대/ 틔밭	
	김순희	여(81)	1961		사별	한국	공장임대/ 틔밭	
	지정희	여(77)	1961		사별	한국	공장임대/ 틔밭	
	황순옥	여(77)	1977		사별	한국	공장임대/ 틔밭	

#### 4. A공단의 인구생태학적 지형

A공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의 실질적인 거주민이 외국인 이주민들이란 점이다. 한센인 선주민들이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면서 빈 집은 이주민들로 채워졌고, 과거 돼지와 닭을 키웠던 축사가 가구공장과 전시장으로 개조되면서 가구 및 제조물품이 주요 생산품이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인 공장주와 노동자들은 A공단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A공단의 낮 풍경과 밤 풍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주민 대부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낮 시간 동안 A공단은 가구를 배달하는 트럭과 가구전시장을 오가는 구매자들만이 눈에 보인다. 반면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6시 이후 퇴근시간, 그리고 밤 시간대 A공단의 거리는 이주민들과 이들이 탄 오토바이로 넘쳐난다. 늦은 밤에는 지역 활동가나 동네 상인을 제외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 이처럼 A공단이 이주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센인 집단 거주지라는 낙인 때문이다. A공단 내에 한센인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A공단을 한센인 거주지로 인식한다.

A공단은 골목골목 가득 찬 ‘냄새’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각인시킨다. 강력한 접착제 및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 제조의 특성상 전기톱 등의 기계소음과 함께 페인트 및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A공단 거주민 대부분은 미등록이주민이고, 건물의 90% 이상이 무허가이다. 선주민 건물주는 공장주에게 무허가 공장을 임대하고, 이주민에게는 무허가 집을 임대한다. 공장주는 무허가 공장을 임대받아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해 가구를 생산한다. 이주민은 무허가 집에 살면서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노동을 하는 셈이다. A공단의 이주민과 한센인 선주민, 그리고 공장주라는 세 그룹은 이런 점에서 외부 개입이 없는 한 지역 내에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공생하고 있지만 위법적 상황이 가져올 불예측적인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 미등록 신분 이주민의 ‘불법성’과 사회적 격리대상이었던 한센인 선주민의 ‘주변성’, 그리고 소규모 자본과 싼 임금 의존적인 공장주의 ‘영세성’이 결합된 암묵적 합의에 의해 A공단 가구 산업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A공단은 독특한 공간이 된다. 국가는 주권과 법률을 통해 A공단 이주민의 삶을 제약하지만 상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법제도가 미등록이주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순간은 ‘단속’이라는 특정한 기간 동안이다. A공단 이주민은 간헐적인 단속의 불예측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 양육, 살림, 송금 등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터에서는 한국인 공장주와 직장 동료들과의 협력, 집주인과는 거주 기간 및 월임대료의 계약, 동네 가게 주인과의 소비자로서의 관계 맺기 등을 통해 거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구성해간다. 무엇보다 A공단 내 이주민지원단체와 다양한 종족 공동체 덕분에 미등록이주민으로서의 일상적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소속감을 획득해간다. 생존을 위한 목적에 따라 이주민들이 만나서 협상하는 주체와 내용은 다르다. 일터와 삶터로서 A공단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며 미등록이라는 유사한 신분적 지위를 공유하는 이주민들을 한 범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이들의 중요한 삶의 목표는 불예측적인 단속을 피하고, 가능한 귀환을 유보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속적인 단속은 미등록이주민을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A공단은 ‘불법’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예고될 때마다 가장 큰 규모의 경찰/출입국 관리소의 합동 단속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민들이 A공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귀속성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미등록’ 지위는 감추거나 숨겨야 할

조건도 아니고,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다. 미등록 지위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 A공단에 거주한 이주민들은 가구 제조 공정의 모든 분야의 숙련된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이 제공하는 싼 임금과 한국 선주민을 능가하는 가구 공정의 기술은 공장주에게 ‘선호’되는 조건이다. 미등록이주민 스스로도 A공단의 생존이 미등록이주민의 적절한 수와 체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A공단에서 집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불법’이라는 신분적 지위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지역 자체가 가족 구성 및 육아, 양육 등의 일상적 삶을 재생산하기 어려울 만큼 물리적 열악함을 갖고 있고, 주거 환경 또한 좋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상주하는 이주민 이외에 새로운 유입 인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인들은 유해한 노동환경과 과도한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가구제조를 기피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인력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A공단은 5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 주를 이루고 한국인 사장과 외국인노동자 1명으로 이뤄진 사업장도 많다. 고용주들은 한국인 노동자의 60% 정도의 임금으로 이주민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한다. 단속으로 인해 A공단 지역의 이주민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되면 공장 가동 자체가 되지 않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단속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고립된 게토처럼 존재하는 A공단은 이주민의 적절한 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공장의 생존도 선주민의 임대 수입도 보장되지 않는다.

A공단에서는 국가가 규정하는 ‘불법’적 지위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이 되고, 이주민들의 노동자나 세입자로서의 위치가 이들의 실제적인 지위를 구성해낸다. 이주민은 사업주들의 생산관계와 선주민들의 임대관계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며 A공단의 지역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행위자다. 이처럼 A공단에서 세 이해관계자가 갖는 서로에 대한 상호의존성은 각각의 불법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된다. 악셀 호네프(2006)는 개인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객체

화된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타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지지가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관점에 앞서 타자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우선으로 한다. 물론 선주민과 사업주가 타자인 ‘불법’이주민을 인정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그러나 병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센인들이나, 외부의 비싼 임대료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와야 했던 사업주들의 이주배경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권력 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A공단 이해관계자들은 주변성과 ‘불법성’을 함께 인정함으로써 A공단을 유지해 나간다. A공단의 생산과 재생산은 지난 20년간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이용하는 모순적 방식을 통해 구성되어왔다. 다음에서는 미등록이주민과 한센인 선주민, 공장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5. 주거와 임대관계

A공단의 생산 및 재생산 순환구조를 방해하는 큰 장애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민 단속이다. 단속은 이주민의 감소를 가져오고, 공장의 생산력을 떨어뜨리면서 이주민과 공장주 그리고 선주민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을 가져온다. 단속과 추방의 위협을 안고 사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집은 일종의 피난처이다. 집안에 머문다고 단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일터나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 따라서 미등록이주민에게 거주할 공간은 중요하다. 월임대료나 방의 시설보다는 단속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거지 선택의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이주민들은 거주 기간, 가족 여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자주 하지만, A공단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단 이주민은 과거 공장기숙사로 쓰던 방에 화장실과 부엌을 추가

한 원룸형 방, 공장 내 숙소, 단독주택의 반지하나 1층을 임대한 곳에서 거주한다. A공단 건물의 90% 이상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옥상에 건물을 올리거나 집을 개조하는 것에도 별도의 허가나 제재는 거의 없다. 한센인들이 모여 산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 A공단은 경찰의 치안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혹은 내버려두는 일종의 ‘치외법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사의 취재도 불가능했던 공간이었다(고광우 1998). 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이주민의 거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연한 방식으로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할 수 있었다. A공단에서 월임대료는 방의 개수나 크기,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0~25만 원이 기본이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룸형은 이주민들 사이에 ‘빌라’라고 불리는데, 선주민들이 월임대료를 받기 위해 임시로 지어 올린 공장 옥상의 조립식 혹은 컨테이너형 거주지이다. 이들 원룸은 약 일 미터가량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6, 7개의 방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 방의 규모는 3평 정도로,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 원룸구조의 방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일 미터 길이의 싱크대가 있다. 원룸형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없는 싱글 남녀나 아이가 없는 커플들이 선호한다.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제리 씨나 미혼인 낸시 씨, 결혼했지만 혼자 살고 있는 파티마 씨 등이 원룸형에 거주하고 있다. 같은 국적의 이주민들이 한 빌라에 모여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거나 주말 여가를 함께 즐긴다.

공장형 방은 공장 내부에 들여놓은 컨테이너다. 방의 구조는 원룸형과 비슷한데, 원룸형이 공장 옥상이나 공장 외부에 있다면 공장형 방은 공장 내부에 있어 어둡고 습기가 많다. 이곳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공장의 유일한 고용인이거나 공장을 책임지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임대비용과 각종 생활비를 절약하려는 이주민의 필요와 공장 경비와 청소를

맡기고 싶은 공장주의 이해가 만나 형성된 거주방식이다. 2005년에 아내와 자녀를 네팔로 보낸 공장장 라이 씨는 사업주가 마련해준 공장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주민은 단속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될 뿐 아니라, 물건 출입과 관련된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아 늘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이주민들은 공장 외부의 독립된 공간을 선호한다.

단독주택은 선주민이 이사를 나가면서 비운 집으로 보통 자녀가 있거나 가족 단위로 이주한 이주민이 모여 산다. 다른 주거형태보다 비싸지만 사생활이나 보안에 덜 신경을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독주택 일부에는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은 이주민의 어린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싱글들은 단독 또는 친구들과 원룸형 빌라에서 공동거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동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자녀가 생기면 이주민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택, 특히 '새동네'라 불리는 지역의 주택을 선호한다. 새동네는 A공단에 위치한 단독주택형 거주지이다. 주로 한센인들이 살던 곳으로 공장의 먼지와 냄새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어 자녀가 있는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새동네 벽돌집의 월임대료는 25만 원이나 30만 원가량으로(방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방 하나를 기준으로) A공단의 다른 곳보다 비싸지만, 수요자가 많아 구하기 쉽지 않다. A공단 아이들에게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보려는 부모의 바람 때문에 새 동네가 선호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프리시마 씨나 루나 씨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거주 환경을 바꾼다. 2000년 한국에 온 차크마 씨의 경우 A공단에 처음 왔을 때 3평 크기의 공장기숙사 방에서 5~6명과 함께 살았다. 차크마 씨는 한국이주를 위해 빌린 돈을 빨리 갚기 위해 다리 뻗고 자는 것도 어려운

방에서 다른 동료들과 5년을 함께 살았다. 이주민이 많았던 당시에는 방도 부족했기 때문에 공동 거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차크마 씨가 처음 살던 집은 ‘쁘라’ 빌라로 불렸다. 뿌라는 ‘불에 탄다’는 방글라데시 말로 살던 집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재료로 만들어져 그렇게 불렸다. 이후 옮긴 곳은 ‘빌라’였는데, 빌라 내부 양쪽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같은 지역 출신자 40여 명이 함께 살았다. 당시 빌라 전체에 화장실과 샤워실은 하나였고 그나마 겨울에는 물이 얼어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 나름 생활이 윤택해진 차크마 씨는 현재 방글라데시 친구 두 명과 함께 단독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다. 방 두 개에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딸린 벽돌집이다. 월임대료와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에 식비를 포함해 한 달에 평균 15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간다.

이주민들이 집을 자주 옮기는 이유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A공단 임대거주지의 대부분은 보일러나 화장실 고장 등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 임시 건물로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다.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집뿐만 아니라 A공단의 벽돌집들도 낡고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취약한 주거 시설 때문에 이주민들은 ‘고비용’ 삶을 살고 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한겨울 원룸의 난방비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들어간다. 여름의 경우, 옥상 위 철근 컨테이너는 ‘사우나’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밤까지 남아있는 열기를 없애기 위해 에어컨을 종일 가동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다. 또 방마다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간 사용한 물세를 알 수 없고, 집주인이 내라는 대로 내야한다. 임대주가 담당해야 할 장판과 벽지교체 또한 이주민에게 전가되지만 이주민들이 임대료 인하나 고장 난 집의 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낸시 씨는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 것을 여러 번 집주인에게 말을 했지만 고쳐주지 않아 집안이 물바다가 된 적이 많다. 낸시 씨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여러 번 집주인에게 말을 했다. 집주



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물난리가 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낸시 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거주지 대부분은 개보수를 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고, 보안에도 취약하다. 월임대임에도 집의 도배나 장판 교체 등은 요구하기 어렵고 고장 수리 요구에도 집주인들은 녹장을 부리기 일쑤다. 이 때문에 이주민들은 자주 거주지를 바꾼다. 제리 씨는 5년마다 집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데, 괜찮은 집도 5년을 거주하면 수리할 곳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건물주들은 무허가 건물에 개보수로 인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한때 2,000여 명에 달했던 이주민 수가 최근 700여 명으로 줄었음에도 임대 거주지의 환경이나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임대료도 하락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이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프라이버시나 개인생활에 대한 공간적 욕구가 커지면서 일인용 원룸형태 거주지를 찾는 이주민이 증가했다. 이는 이주민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거주지 임대료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건물주 선주민들은 빌라 방을 원룸으로 개조하며 줄어드는 이주민으로 인한 임대 수입의 감소에 대응하고 이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임대 수익을 보존해왔지만, 개보수를 위한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이주민이 떠난 자리에 한국인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건물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임대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A공단 외부의 더 싸고 안락한 거주환경보다 그래도 임의적 단속을 피하고 동료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연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단의 더 비싸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호한다. A공단을 유일한 ‘안심처’로 간주하는 미등록이주민의 취약한 지위는 임대주에게는 집수리 및 관리 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는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한겨레21, 제785호). 최대의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임대주와 최소의 이동으로 단속의 위험을 피하려는 이주민의 이해가 만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싼 임대관계

가 관습화된다.

A공단 임대인 선주민 대부분은 고령자로서, 공장주나 이주민이 지불하는 임대료로 생활을 한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주민들과 부딪치는 경우는 드물다. A공단 내 거주하는 고령의 선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고, 이주민과 한 주택에 살면서 유사 가족처럼 음식을 주고받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가까운 슈퍼 상인들에게 집 관리를 맡기곤 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집 관리를 담당하는 인근의 슈퍼주인에게 월임대료를 지불하고, 몇 년을 살아도 집주인을 만나본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주민들이 불평 없이 월임대료를 내는 한, 집주인 선주민과 이주민은 서로 만날 일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단속이나 경기 불황으로 이주민들이 A공단을 떠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면접한 선주민 임대인들은 전에 비해 자신의 임대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가, 공단이 얼마나 침체되었는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공단의 주거나 거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 6. 노동과 고용관계

A공단의 노동과 고용관계의 주요 행위자는 한국인 고용주와 이주민 고용인이다. 노동집약적이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해산업인 가구제조업은 1990년대부터 사양화로 들어섰다. 국내 가구제조업의 쇠퇴에도 A공단이 가구제조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A공단의 특수성이 큰 역할을 했다. 가구공장이 A공단으로 이주했거나 창업한 이유는 행정규제가 심하지 않고, 임대료가 저렴하며, 생산인력이 풍부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한센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행정의 간섭이 거의 없고 거주

지로서 선호되지 않아 임대료가 싸며 주변에 이주노동자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고광우 1998).

가구제조로 특화된 A공단은 아동용 가구부터 모텔가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가구공장 사이사이에 신발과 슬리퍼, 금형사출이나 유리, 섬유, 난방매트를 만드는 노동집약적인 3D업종이 몰려 있다. 한국인들이 임금이나 노동환경 때문에 꺼려하는 A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영세가구제조업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노동력이다. 이주민들은 적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가구제조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로써 A공단에서 생산해 내는 각종 가구들의 특성과 공장운영방식 및 가구제조 기술 등을 숙지한 숙련 노동자들이다. A공단이 생긴 이래로, 이주민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인 가구를 만들면서 가구의 전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해왔다.

A공단은 종업원 2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이 전체 가구제조업체의 96.7%를 차지하고, 공장주는 가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기술과 영업을 습득한 고용인 출신이 많다. A공단 가구공장주들은 낮은 학력과 적은 자본을 바탕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자신들의 과거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참조’ 체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장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고광우 1998). 그러나 A공단의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이주민이 감소한 상황에서 영세제조업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A공단 내 가구제조업체수는 약 250여 개 내외로 세, 네 개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2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의 60% 이상은 5~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1인 고용인 체제로 운영되는 공장도 꽤 있다. 매년 약 20~30%의 가구공장이 폐업 또는 이전으로 A공단을 떠나지만 그만큼의 다양한 제조업체가 창업되거나 외부에서 들어온다. A공단은 사양산업인 가구제조가 마지막까지 머무를 수 있는 싼 공장임대료와 싼 임금을 제공하는 이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한국인 노동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공장주와 이주민은 상호간 구인·구직 정보를 축적하고 이용하면서 노동력을 유지한다. 공장주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이주민은 직장을 구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들 간에는 엄격한 위계가 없고 상시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A공단에서 노동자를 구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데에는 아는 사람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공장주가 노동자를 구할 때에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이주민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고용인들에게 아는 노동자를 추천받는다. 이주민이 일터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는 공장주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변 동료들을 통해 일을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IMF 이후 등장한 아르바이트(임시고용) 인원은 한국인 사업주가 직접 구하기도 하지만, 일을 구하는 이주민이 직접 공장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구하기도 한다. 고용주와 미등록이주민의 구인·구직에 엄격한 기준이나 위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둘의 관계는 여전히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고용주는 미등록이주민의 법적지위를 이용해서 싼 임금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미등록이주민은 한국인과의 임금차별을 인식하긴 하지만, 체류자격 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취업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공단에 머문다.

A공단 또한 체불 임금이나 언어적, 물리적 폭행으로 인한 한국인 고용주와 이주민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A공단이 이주민 집중 거주지로서 상대적으로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협상력’이 구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주민들은 월급이 제때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공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런 공장에 취업을 피하는 관행을 만들어냈다. 공장주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통된다. 또한 한국인 동료들의 욕설이나 험담, 머리 때리기와 같은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도 ‘맞서 욕하기’, 한국인 ‘왕따 시키기’ 등의 방법으로 이주자들의 대처는 강력한 편이다. 사장에

대한 평판이 좋아 취업한 이후에도 월급이 한, 두 달 이상 밀리면 미련 없이 다른 공장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한번 밀리기 시작한 월급은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역 이주민들의 지식이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선호하는 공장도 바뀌게 된다. 급여를 많이 주는 업체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늦지 않게 “따박 따박” 급여를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인 월임대료, 전기요금, 기름 값, 수도요금, 식비 등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월급 연체에 따라 송금 등이 늦어지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지고 삶의 불안은 가속된다. 프리사마 씨는 남편과 같은 가구공장에 있다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했다. 그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직 했다. ‘급여를 많이 주지만 사장님이 월급을 제 때 안 주면 둘 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한 공장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느꼈다. 프리사마 씨는 급여가 적더라도 월급을 제 때 지불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한명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주민들이 장기계약 즉 정기고용이라는 안정적 일터를 선호할거라는 추측은 A공단에서는 빗나간다. 폐업해서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공장주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자본의 유연성만큼 자신들의 노동도 유연해져야함을 깨닫는다. 최근 이주민들이 월급제보다는 일당제를 선호하는 것 또한 자본이 선호하는 노동의 유연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일종의 전략이다. 리차드 세넷(2002)이 신경제시대의 노동특징이라고 분석한 리엔지니어링과 유연성, 위험과 단기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칙들이 단속과 추방이라는 불안 속에 사는 ‘불법’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노동형식이 되고 있다. 즉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삶의 연속성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이런 불연속에 맞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하루 단위의 시간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노동력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이다. 전에는 월급제로 고용되어 일하던 제리 씨나 낸시 씨, 에라인 씨도 최근에 일급제로 노동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나 모든 이주민들이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공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해질수록 이동 또한 쉽지 않다. 차크마 씨는 이주민 7명과 함께 모텔가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한국인 사장은 아침에 잠깐 공장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다. 한국사장이 공장 일을 모두 차크마 씨에게 맡겼기 때문에 차크마 씨는 아르바이트 고용부터 가구 재단 및 납품, 전 생산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일명 공장장인 셈이다. 차크마 씨는 ‘가구재단’이라는 고급 기술을 가진 숙련 공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크마 씨는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사장과의 의리와 책임감 때문에 참고 견뎠다. 못 받은 월급이 천만 원 이상이 된 최근에 다른 공장으로 이직했다.

이주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A공단 가구제조의 특성상,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민 단속은 공장주들에게는 공장의 존폐가 달린 문제다. 2005년과 2008년 법무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많은 미등록이주민이 추방당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이주민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 특히 2008년 법무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130여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추방되면서 당시 약 30퍼센트의 공장이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미등록이주민의 저임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공장들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2008년 단속을 통해 공장주들은 미등록이주민의 위기와 자신들의 생존이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경험했다. 또한 건물주들도 이주민의 수와 임대수입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계기로 공장주뿐만 아니라 건물주들 또한 단속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임대주 선주민들은 공장주들의 ‘고의적’ 임금체불 때문에 이주민들이 공단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민을 대신해 고용주를 압박 해 체불임금을 받아준 사례도 있다.

이주민들이 단속으로 추방당하는 것만큼, 자발적 귀환으로 인한 이주민 감소도 예민한 문제이다. 귀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이주민

의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없다. 17년 동안 사출 일을 해 온 라이 씨는 현재 이 공장의 유일한 직원이다. 90만 원으로 시작한 월급은 110만 원이 올라 현재 200만 원이다. 한때는 11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라이 씨 혼자뿐이다. 사장이 가끔 일을 도와주고, 아주 바쁠 때 ‘아줌마’라고 불리는 한국인 여성을 아르바이트로 쓴다. 라이 씨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부인이 두 명의 아이와 함께 2005년 귀국한 이후부터, 귀환을 준비해왔다. 그때마다 사장이 라이 씨의 발목을 잡았다. “네가 가면 나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내가 빚이 많은데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식의 말로 공장사장은 “일 년만 더”를 몇 년 쯤 라이 씨에게 요구해 왔고, 라이 씨도 사장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채 네팔의 가족들에게 “일 년만 더”라고 말해왔다. 더 이상 ‘양치기소년’이 되기 싫어 올해는 꼭 가족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사장이 순순히 보내줄 지는 모른다. 사장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면 퇴직금과 비행기 표 구매 비용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라이 씨를 붙잡고 있고, 라이 씨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상당히 큰 목돈인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귀환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단속보다는 신고만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소가 특정 공장으로 표적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행동반경은 좁아지고 있다. 이주민들 간의 개인적 싸움이나, 공장주나 한국인 동료와의 싸움이 신고, 표적 단속, 이주민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쪽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미등록이주민이 어느 공장에 있다고 신고를 하면, 며칠 이내로 그 공장은 단속을 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미등록이주민이 축적해 놓은 집단적 대항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표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심화될 경우, 직접적인 대항이나 저항보다는 조용히 고용주를 피하거나 일터를 떠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이런 ‘피하기’ 전략은 미등록이주민의 물질적·심리적 손해로 쌓

이게 되고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폭력 사건을 통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된다. 최근에 네팔로 돌아간 낸시 씨의 남자친구는 돌아가기 전까지 근무했던 일터의 한국인 공장장과 싸운 후 포적 단속에 의해 추방되었다.

공장주들의 영세자본과 이주민들의 ‘불법’지위는 A공단의 가구제조업의 지속을 보장한다. 평생 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진 기술은 가구제조가 전부인 가구공장주들이 업종을 변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등록의 지위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A공단을 떠나는 것 또한 미등록이주민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다. 미등록이주민이 제공하는 숙련된 기술의 저렴한 노동력과 직원채용에 있어 체류자격을 따질 수 없는 공장주의 입장은 A공단 노사 관계의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구성해낸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A공단 노동조건인 열악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장은 여전히 축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매년 A공단에서는 2, 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는 이주민과 전 재산을 잃는 사업주도 있다. 주 5일제가 널리 퍼지고 있지만 A공단의 이주민들은 토요일도 평일만큼 일한다. 한국인들의 진입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했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바로 미등록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주거와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주민들은 불법이라는 조건으로 인한 삶의 불예측성에 대항하고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 공단에 머무르고 있지만,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불법’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 8. 나가며

A공단 미등록이주민들은 끊임없는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노동과 일상은 반복되지만 임시적이고 불안정하다. 이



들은 불예측적인 삶을 관리하면서 이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구성해나가고 삶의 방식을 재배치한다. ‘불법성’은 이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커다란 압력이다. 불법성이 동반하는 단속과 추방은 이들의 삶을 단절시킨다. 가족, 노동, 친구, 동료, 오랫동안 살아온 일터와 A공단과의 모든 유대와 연관 관계를 일시에 끊어버리기도 한다. 다행이 운이 좋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이주민도 끊임없이 단속에 불안해하며 장기적인 생애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삶의 계획과 경험은 더욱 단기적이 되고, 사회활동 무대는 A공단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A공단은 미등록이주민의 게토화된 생존장으로 존재한다.

월임대료도 비싸고 시설도 좋지 않은 임대 거주지 외에 선택지가 없고, 짠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주민은 A공단을 심리적 ‘고향’으로 의미화 한다. 미등록이주자로서 극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료이주민 집단이 다수를 이루는 평등한 다문화적 환경 때문이다. 법, 선주민과 고용주가 지배하는 낮 시간대와 다르게 밤 시간의 A공단은 이주민들의 세상이 된다. 생일파티를 열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만들어내는 장소이며 친구와 연인을 만드는 친밀한 공간이다. 이주민 대부분은 A공단을 ‘우리의’ 거주지와 일터로 느끼고 이런 장소귀속성은 이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나 본국 귀환을 유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미등록이주민과 선주민 그리고 사양화 길에 들어선 가구제조업 공장주들의 이해관계는 A공단을 재생산시키는 주된 원리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최적화되고 최대화되는 방식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유지된다. 이런 이해관계는 국가가 부여하는 합법과 불법의 범주 및 경계와 맞물리고 경합하면서 A공단을 재생산한다. 선주민의 무허가 건물, ‘불법’이주민의 노동력, 공장주의 자본가적 이해관계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의식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관계가 깨지면 A공단의 재생산은 어렵다(전혁진 2002).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성되는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계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회로망에서 주변성, 불법성, 영세성이란 개념에 대항하면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 실천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A공단의 사례는 지역이 직면한 전지구적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지역민으로서 미등록이주자들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논문접수일: 2013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3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7일

## 참 고 문 헌

강윤희

2012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 18(2): 5-51.

고광우

1998 “수도권 가구제조업체의 입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논문.

고준기

2006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법의 인권침해적 조항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9: 287-327.

김민정

2011 “필리핀 노동이주여성의 일과 한국생활”, 『한국문화인류학』 44(2): 313-358.

- 김병록  
2010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문제”, 『법학논총』 17(3): 23-52.
- 김윤식  
2007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II): 1165-1175.
- 김희경  
1995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여성과 사회』 6: 101-114.
- 김희숙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주노동자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노재철  
2010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논총』 18: 37-90.
- 박미경  
2010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미등록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2): 101-100.
- 세넷, 리차드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옮김, 문예출판사.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2): 39-77.  
2006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2005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 법무부.
- 신지원  
2007 “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5(8): 24-34.
- 이경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32: 509-536.

이선화

2008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이성희

1992 “노동: 코리안 드림, 불법체류자들의 24시”, 『월간 사회평론』 92(12): 162-167.

전혁진

2002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선교 활동과 방향”,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조우석

2004 “실무연구(實務研究):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처리정책(處理政策): 주요국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법조』 53(7): 239-260.

최영신

2007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1319-1340.

최홍엽

2007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민주법학』 33: 355-386.

호네트, 약셀

2006 『물화 인정이론적 탐구』, 강병호 옮김, 파주: 나남출판.

Ahmad, Ali Nobil

2008 “Dead men working: time and space in London’s (illegal) migrant economy,” *Work, Employment & Society* 22(2): 301-318.

Askola, Heli

2010 “‘Illegal Migrants’, Gender and Vulnerability: The Case of the EU’s Returns Directive” *Feminist Legal Studies* 18(2): 159-178.

De Genova, Nicholas P.

2002 “Migrant “illegality” and deportability in everyday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419-447.

Hier, Sean P. and Joshua L. Greenberg

2002 “Constructing a discursive crisis: risk, problematization and illegal Chinese in Canada,” *Ethnic and Racial Studies* 25(3): 490-513.

Kretsedemas, Philip

2008 “Immigration Enforcement and the Complic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Understanding Local Enforcement as an Exercise in Neoliberal Governance,” *American Quarterly* 60(3): 553-573.

LeVoy, Michele and Eve Geddie

2010 “Irregular Migration: Challenges, Limits and Remedies,” *Refugee Survey Quarterly* 28(4): 87-113.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McNevin, Anne

2007 “Irregular migrants, neoliberal geographies and spatial frontiers of ‘the pol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4): 655-674.

Oelgemöller, Christina.

2010 “‘Transit’ and ‘Suspension’: Migration Management or the Metamorphosis of Asylum-Seekers into ‘Illegal’ Immigrant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3): 407-424.

Paspalanova, Mila

2008 “Undocumented vs. Illegal Migrant: Towards Terminological Coherence,” *Migraciones internacionales* 4(3): 79-90.

Walter, Nicholas, Philippe Bourgois and H. Margarita Loinaz

2004 “Masculinity and undocumented labor migration: injured Latino day laborers in San Francisco,” *Social Science & Medicine* 59(6): 1159-1168.

Willen, S. S.

2007 “Toward a critical phenomenology of “illegality”: State power, criminalization, and abjectivity amo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Tel Aviv,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45(3): 8-38.

매일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 “값싸고 질좋은 가구 팝니다”

한겨레 21, 제785호, “갈힌 노동 달힌 희망”

〈Key concepts〉: Illegality, migrants, undocumented workers, interdependence, deportation

## Regional Reproduction in the Social Relations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nd Local Koreans in a Furniture-Making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Province

Kim, Hyun Mee\* and Yu, Yu Seon\*\*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relations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developed with local Koreans in a furniture-making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Province, which lies just outside the capital city of Seoul. This industrial complex is among many areas where undocumented workers are concentrated, and is hence constantly being cracked down by the government. Yet, despite leading an unstable and difficult life, many of these undocumented workers still strive to improve their life by participating as active agents in the social reproduction of the area where the complex is located,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eing arrested and deported, and also to enhance their negotiating power with local Koreans. Based on nine months' fieldwork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including undocumented workers and Korean

---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 Ph. D Student, Graduate Program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Yonsei University

residents,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nd Koreans — mostly property-owners and employers — is not completely exploitative or mutually benefitting as commonly believed, but one that is based on a high degree of interdependence.